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년 1월 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타임폴리오투자자문
(영문명) TIMEFOLIO Investmen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timefolio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10 SK증권빌딩 19층
(전 화) 02-533-8940

대 표 이 사 : 황성환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전무이사
(성 명) 차문현 (전 화) 594-8940

작 성 자 : (직 책) 팀장
(성 명) 김수지 (전 화) 533-894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10-2호)

주요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	주요주주 제외	
2. 변경된 주요주주명		안형진	
-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	임원	
3. 변경내역	변경전	소유주식수(주)	48,064주
		소유비율 (%)	4.50%
	변경후	소유주식수(주)	48,064주
		소유비율 (%)	4.50%
4. 변경사유		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	
5. 변경일자		2015. 12. 03	
6. 확인일자		2015. 12. 03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없음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.
- 주2) 주요주주의 추가 및 제외 등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한다.
- 주3) “변경내용” 에는 “주요주주 추가”, “주요주주 제외”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4) “소유주식수” 및 “소유비율” 은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상기사항 외의 주요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6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년 1월 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타임폴리오투자자문
(영문명) TIMEFOLIO Investmen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timefolio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10 SK증권빌딩 19층
(전 화) 02-533-8940

대 표 이 사 : 황성환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전무이사
(성 명) 차문현 (전 화) 594-8940

작 성 자 : (직 책) 팀장
(성 명) 김수지 (전 화) 533-894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10-2호)

주요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	주요주주 제외	
2. 변경된 주요주주명		임동율	
-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	임원	
3. 변경내역	변경전	소유주식수(주)	27,416주
		소유비율 (%)	2.57%
	변경후	소유주식수(주)	27,416주
		소유비율 (%)	2.57%
4. 변경사유		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	
5. 변경일자		2015. 12. 03	
6. 확인일자		2015. 12. 03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없음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.
- 주2) 주요주주의 추가 및 제외 등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한다.
- 주3) “변경내용” 에는 “주요주주 추가”, “주요주주 제외”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4) “소유주식수” 및 “소유비율” 은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상기사항 외의 주요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6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년 1월 0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타임폴리오투자자문
(영문명) TIMEFOLIO Investmen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timefolio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10 SK증권빌딩 19층
(전 화) 02-533-8940

대 표 이 사 : 황성환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전무이사
(성 명) 차문현 (전 화) 594-8940

작 성 자 : (직 책) 팀장
(성 명) 김수지 (전 화) 533-894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10-2호)

주요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	주요주주 제외	
2. 변경된 주요주주명		김환웅	
-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	임원	
3. 변경내역	변경전	소유주식수(주)	24,374주
		소유비율(%)	2.28%
	변경후	소유주식수(주)	24,374주
		소유비율(%)	2.28%
4. 변경사유		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	
5. 변경일자		2015.12.03	
6. 확인일자		2015.12.03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-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.
- 주2) 주요주주의 추가 및 제외 등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한다.
- 주3) “변경내용”에는 “주요주주 추가”, “주요주주 제외”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4) “소유주식수” 및 “소유비율”은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상기사항 외의 주요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6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6년 1월 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타임폴리오투자자문
(영문명) TIMEFOLIO Investmen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timefolio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10 SK증권빌딩 19층
(전 화) 02-533-8940

대 표 이 사 : 황성환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전무이사
(성 명) 차문현 (전 화) 594-8940

작 성 자 : (직 책) 팀장
(성 명) 김수지 (전 화) 533-894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10-2호)

주요주주 변경

1. 변경내용		주요주주 제외	
2. 변경된 주요주주명		안승우	
-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		임원	
3. 변경내역	변경전	소유주식수(주)	14,173주
		소유비율 (%)	1.33%
	변경후	소유주식수(주)	14,173주
		소유비율 (%)	1.33%
4. 변경사유		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	
5. 변경일자		2015.12.03	
6. 확인일자		2015.12.03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없음	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때 신고한다.
- 주2) 주요주주의 추가 및 제외 등이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신고한다.
- 주3) “변경내용” 에는 “주요주주 추가”, “주요주주 제외” 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
- 주4) “소유주식수” 및 “소유비율” 은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요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다.
- 주5) 상기사항 외의 주요주주변경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6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 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